

2025년 하반기 파견채용 예정 개방형 한국교육원장 추가 선발 공고

우리 부에서는 2025년 하반기 파견(채용) 예정 개방형 한국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선발할 예정이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교육부장관

1. 선발 직위 및 인원

○ 개방형 한국교육원장

소재국	직위	인원	기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장	1명	'25.07.01. ~ '28.06.30.

한국교육원의 주요 업무 ※ 직무수행요건명세서(붙임) 확인

- ① 한국어 등의 보급
- ②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 ③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 ④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 ⑤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 ⑥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천대상자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①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 ② 재외교육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국외 근무에 지장이 없는 가정환경을 가진 사람
- ④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 또는 채용 기간이 끝난 후 4년이 지난 사람(기준일: 파견 예정일)
* 재외교육기관장이 아닌 재외교육기관 교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
- ⑤ 직위해제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2차 시험시작일)

- ⑥ 재외교육기관 파견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없거나, 적발되었으나 적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기준일: 파견 예정일)
- ⑦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
- ⑧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외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파견예정일 기준, 현직 공무원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이고, 아래 자격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자격 기준
교육공무원	1.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 [공통요건]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조항(기준일: 파견예정일)에 해당 되거나 교장 중임 임기가 파견 만료일 전에 종료되는 사람은 지원 불가 - 또한, 현직 공모 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도 지원 불가(다만, 파견예정일 이전 공모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추천 가능) ※ [참고] 현직 교장이 재외교육기관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 기간은 국내 교장의 임기에 포함
일반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인 사람

공무원이 아닌 사람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파견 예정일 기준, 다음 1~2호의 요건을 갖추고 3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은 1~2호의 요건을 갖추고 4호의 사립학교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한국교육원장은 업무의 성질상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등을 수행하므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지원은 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준용]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다.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바. 8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교육, 행정, 국제교육, 국제교류, 재외동포교육 분야 등 「재외국민 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기능과 관련 있는 학과 전공 및 업무 분야

4. 사립학교 교원

- 가. 교장 자격 또는 사립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3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감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15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외국어 및 국사** ※ 시험과목 일부 면제(「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특례) 적용)

- (외국어) 외국어 점수가 없더라도 지원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 취득 성적이 있는 경우 **제출 가능**
 ※ 외국어 성적은 면접 심사 시, 평가 요소(국제성)로 반영

< 선발 직위별 제출 가능 외국어 시험 종류 >

선발 직위	외국어	시험 종류
공통	영어	▲TEPS, ▲iTEPS, ▲TEPS-Speaking, ▲TEPS S&W, ▲FLEX(듣기·읽기), ▲SNULT, ▲TOEFL, ▲TOEIC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장	러시아어	▲SNULT, ▲FLEX(듣기·읽기)

-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3급 이상 취득(별도 유효 기간 없음) ※ **국사 성적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추천 제외자 : 선발 계획 참조**

3. 선발 절차 등

1 후보자 추천 (추천기관[응시자] → 교육부)

- 추천기간 : 2025. 3. 26.(수) ~ 3. 27.(목) 18:00

2 1차 시험(서류)

- 시험과목 및 배점 : 전문성 평가 점수(100점)
- (전문성 평가 점수) 응모서류에 첨부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 분야 관련 경력 및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합산
- 추천대상자 자격요건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전문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를 2차 시험 대상자로 선정
- 1차 시험 성적은 2차 시험에 반영되지 않고, 2차 시험 대상자 선정 자료로만 활용

3 2차 시험(면접, 현장실사)

- 시험과목 및 배점

선발 직위	평가요소 및 배점					총점
	공직적격성	교육전문성	행정전문성	국제성	리더십	
한국 교육 원 장	10	30	10	30	20	100

평가요소	주요 내용
공직적격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 및 봉사 정신, 적극적 업무추진 등
교육전문성	교육행정력, 교육 분야 국제교류협력, 해외 한국어 보급·유학생 유치에 대한 정책 이해 및 준비 등
행정전문성	파견 국가의 특성 이해, 정책 수립·추진력, 행정관리 역량, 예산 집행, 관계기관 협업 능력 등
국제성	글로벌 마인드 및 스탠다드 구비 정도, 적절한 해당국 언어표현 능력 등
리더십	관계·갈등 관리 역량, 문제해결·봉사역량, 대외협력·개척역량 등

- 방법 : 대면 면접(직무수행계획 발표 면접 포함, 개인별 심층 면접 실시)
 - 직무수행계획서를 참고하여 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하고, 추천자별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현장실사
 - (검증 사항) 인성, 업무 추진(실적), 근무태도, 대인관계 등 검증
 - (실사 순서) 1순위자 대상 우선 실시하여 '적격'으로 확인되면 합격 처리하되, 부적격일 경우 2순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 ※ 1·2순위자 모두가 부적격인 경우 '적격자 없음' 처리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결정) 현장실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 (합격자 공고) '25. 4. 10.(목) 16:00(공고 예정일,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합격자 공고 방법) 교육부 누리집 탑재, 원소속기관으로 통보(전자공문)
- ❖ 현장 실사 후 합격자에 대해 외국 입국·체류허가 가능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본인을 통해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외국 입국/체류허가용)'를 확인 후,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7호(신원상 국외파견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적격'으로 판정
- (신원 조회: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회신 될 경우 합격 취소
 - ※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합격자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함(불응 시 합격 취소)
 - (파견 협의) 국가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이 합격자로 선정된 경우, 원소속 기관과 인사혁신처 간 파견 협의를 필요*하고, 협의 미성사 시 합격 취소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3항
 - (파견 전 사전교육) '25. 6월 중 실시 예정(별도 안내)

4. 행정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2025년 하반기 파견(채용)예정 개방형 한국교육원장 정기 선발 계획) 참조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 제출 서류 : 서식 별첨

- ① 추천기관 추천 총괄표(xlsx) (서식1)
- ② 추천기관 추천자 명단(PDF) (서식2)
- ③ 추천기관 재외교육기관장 자체 심사 기준(PDF) (자체 서식)
- ④ 추천자별 제출 서류

추천자별 제출 서류 목록

1. 응시자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서식3)
2. 응시원서(서식4)
3. 이력서(서식5)
4. 직무수행 계획서(서식6)
5. 직무수행 계획 발표자료(PPTX, PDF - 별도 서식 없음)
6. 자기소개서(서식7)
7. 추천기관장 의견서(서식8)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9)
9. 인사기록카드(NEIS) 사본
10. 외국어시험 성적 사본(외국어 시험 면제 대상자는 학위증서, 이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2. 관련 분야 경력 증명서, 학위·연구논문 등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PDF 파일, 요약 등 발췌본)

□ 제출 기간 : 2025. 3. 26.(수) ~ 3. 27.(목) 18:00까지

□ 제출 방법 : 추천기관에서 교육부로 전자공문 제출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추천기관, 추천대상자(응시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추천기관과 추천대상자(응시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 취소
 - *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인 사람,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 사실 기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 등

2.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 기재 必) 1부
 - 지원자 제출 서류

지원자별 제출 서류 목록

1. 응시자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서식3)
2. 응시원서(서식4)
3. 이력서(서식5)
4. 직무수행 계획서(서식6)
5. 직무수행 계획 발표자료(PPTX, PDF - 별도 서식 없음)
6. 자기소개서(서식7)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9)
8. 외국어시험 성적 사본(외국어 시험 면제 대상자는 학위증서, 이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0.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학위 증서, 경력증명서, 업무추진 실적 증빙자료 등

□ **제출 기간** : 2025. 3. 26.(수) ~ 3 .27.(목) 18:00까지

□ **제출 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지원(응시)자는 제출 서류를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 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접수처】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재외 교육지원담당관실 재외교육기관 파견 담당자 앞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방문 제출 시에는 접수확인증 발급, 다만, **등기 우편 접수 시에는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반드시 접수 확인**

(유선) 044-203-6784, 6783 (이메일) ingzenith@korea.kr

□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지원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도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자*는 합격 취소
 - *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인 사람,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 사실 기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로 수사를 받는 경우 등
 - 선발시험 응시자는 선발시험 응시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입·출국 및 체류에 따른 모든 비용과 합격자로 결정되어 소요된 채용 신체검사, 비자 발급 등 소요 경비 일체를 응시자 본인이 부담
- ※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교육부 한국교육원장 선발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적)용